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67
----------	-------

발의연월일 : 2026. 1. 12.

발 의 자 : 김우영 · 조인철 · 송재봉
이재강 · 김문수 · 이언주
김태년 · 황정아 · 김남희
이정현 · 이주희 · 박상혁
한민수 · 진선미 · 염태영
한준호 · 박민규 · 안도걸
김 현 · 윤종균 · 최혁진
김 윤 · 남인순 · 민형배
정진욱 의원(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사회 전반으로의 확산에 따라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역량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디지털취약계층 교육지원, 인공지능 윤리 교육, 평생교육 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7호,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인공지능 교육의 활성화) 정부는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활용 능력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허위정보 생성·유포의 방지, 저작권 침해 예방 등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디지털포용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능력에 관한 교육지원
4. 인공지능 평생교육 체계 구축
5. 그 밖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의3(인공지능 활용능력 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

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능력 검정의 방법·절차·내용·대상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법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u><신 설></u> 7. (생 략) ③ ~ ⑦ (생 략) <u><신 설></u>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법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6. (현행과 같음) 7. <u>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 항</u>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인공지능 교육의 활성화) <u>정부는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 다.</u> 1. <u>인공지능 활용 능력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u> 2. <u>허위정보 생성 · 유포의 방 지, 저작권 침해 예방 등 인</u>

<신 설>

공지능윤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디지털포용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능력에 관한 교육지원

4. 인공지능 평생교육 체계 구축

5. 그 밖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의3(인공지능 활용능력 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능력 검정의 방법·절차·내용·대상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